

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조례안

의안 번호	제 219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04. 7. 5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제안이유

- 신기술개발, 생산성향상 등에서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지역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

주요골자

- 시사분야는 종합대상과 부문별대상(기업경영, 기술개발, 수출, 노사화합)으로 함
- 수상후보자의 자격을 도내 기업으로 함(제3조)
- 대상심사를 위하여 대상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(위원장 부지사, 위원 15인 이내) 심사함(제4조)
- 대상후보자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·단체 및 시장군수가 추천(제6조)
- 대상은 매년 11월중에 시상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상금 지급(제7조)

의안전문 : 따로 붙임

관계법령 발췌 : 따로 붙임

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신기술 개발 및 생산성향상 등으로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 충청북도 지역경제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 데 모범적으로 이바지한 우수 중소기업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(이하 "대상"이라 한다)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시상분야) 대상 시상분야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종합대상 : 경영 기술 수출 및 노사 등 각 부문 종합 우수업체

2. 부문별 대상

가. 경영대상 : 경영능력, 경영성과, 복리후생 및 투자율 등이 우수한 업체

나. 기술대상 : 연구성과, 기술보유도, 신소재 및 신제품 개발 등이 우수한 업체

다. 수출대상 : 수출증진,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다변화 등이 우수한 업체

라. 노사화합대상 : 노사분규 및 임금체불이 없고 노사화합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킨 업체

제3조(대상후보자) 대상후보자는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충청북도 구역안에 계속하여 주사무소와 공장이 있고 경영, 기술개발, 수출 및 노사화합 등이 우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한 중소제조업을 대상으로 한다.

제4조(위원회 설치)①대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선정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, 부위원장은 경제통상국장이 된다.

③위원은 중소기업 관련기관, 학계, 언론계 등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.

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.

제5조(회의)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 관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기업지원과장이 된다.

제6조(추천 및 심사)①대상 후보자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 단체 및 시장 군수가 추천하되, 추천방법 및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②대상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.

제7조(시상)①대상은 매년 11월중에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시상금을 수여한다.

②제1항의 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도지사가 정한다.

제8조(홍보 등)①대상의 공정성과 홍보를 위해 언론사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

②대상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.

제9조(준용)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포상규정 및 충청북도포상조례를 준용한다.

제10조(실비변상)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